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3. 17.(금) 10:00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유상용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3년 3월 7일

○ 회부일자: 2023년 3월 9일

3. 제안이유

○ 최근 10~2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며 청소년의 일상생활 속 까지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마약 확산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마약 예방교육 및 대책 마련이 미비한 상태임.

○ 이에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마약관련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유해약물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학생 발달단계에 적합

하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함(안 제6조)

- 유해약물 예방교육 위탁 사항을 보완 함(안 제7조)
-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 5.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이유 검토

- 최근 SNS, 트위터 등 인터넷 온라인상에 마약 광고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비대면 유통과 거래를 통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호기심과 또래 집단의 영향이 큰 청소년 시기의 특성상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마약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음.
- 현재 청소년들은 마약 투여는 물론 유통, 판매까지 마약범죄 전반에 연루되어 있어 청소년 마약류 사범 현황을 보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2020년 313명 대비 43.8%, 5년 전 보다는 287.2% 급증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연령대별 증가율도 최고치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되며 경각심을 주고 있음.  
충북에서도 지난해 10월 음성에 거주하는 18세 고등학생이 마약 성분(실로시빈:Psilocybin<sup>1)</sup>)이 함유된 환각버섯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음.

---

1) 실로시빈(Psilocybin): 환각버섯은 멕시코의 초지에서 자생하는 버섯으로 멕시코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를 환각제로 사용해 옴. 이 버섯을 섭취하면 환각, 정신착란, 자각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남.

○ 현재 교육부는 2019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sup>1)</sup>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도 매년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마약류와 같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과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큰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

### 〈충청북도교육청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현황(2020년~2022년)〉

#### ■ 학교급별 교육 횟수 (2022.8.31.기준)

(단위: 교)

급 별	2020					2021					2022				
	전체 학교	미 실시	실시학교			전 체 학 교	미 실시	실시학교			전체 학교	미 실시	실시학교		
			1 회	2 회	3회 이 상			1 회	2 회	3회 이 상			1 회	2 회	3회 이 상
초	260	5	101	104	50	259	2	96	109	52	256	0	113	97	46
중	128	16	67	30	15	129	5	68	32	24	129	0	79	33	17
고	84	9	41	17	17	85	6	36	25	18	83	0	55	15	13
총계	472	30	209	151	82	473	13	200	166	94	468	0	247	145	76

#### ■ 교육내용별 실시 현황 (마약류: 2022.8.31.기준)

(단위: 교)

급 별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학교	마약류	약물 오남용	전체 학교	마약류	약물 오남용	전체 학교	마약류	약물 오남용
초	260	255	260	259	257	259	256	250	256
중	128	112	128	129	124	129	129	112	129
고	84	75	77	85	79	79	83	70	83

1) 교육부는 2019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학생 7대 안전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을 통하여 1년에 10시간, 학기당 2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충청북도교육청 마약 관련 외부전문기관 의뢰 교육 실시 현황〉

- 2020~2022년: 도내 유관기관(충북약사회)과 업무협약으로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연도	지원학교	실시 횟수	대상인원	비고
2020년	21교	70회	1,867명	충북마약퇴치운동본부
2021년	30교	74회	1,767명	
2022년	42교	177회	7,059명	충북약사회 (약물오·남용예방교육)
	9교	40회	1,570명	
	17교	70회	1,739명	대한약사회 (약바르게알기교육)

- 이에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 받고 있는 청소년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며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대처 역량을 키워주고자 현행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 “유해약물” 정의 규정에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유해 약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개념을 명료화하고 마약류 관련 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에는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 예방교육 횟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교육시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고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는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충청북도교육감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유해약물 위탁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였음.

- 안 제9조에 유해약물 예방 및 대처에 관한 홍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홍보체계 마련을 규정하여 유해약물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주요내용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